

「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03월 07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6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7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2년 3월 1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일자리경제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평창군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,
- 산·학·연 연계를 통해 신성장 산업 육성 및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전략산업 육성 목적, 정의 및 기본방향(안 제1조 ~ 제3조)
- 전략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내용(안 제4조 ~ 제5조)
- 평창군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(제6조 ~ 제1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남섭)

○ 본 조례안은

평창군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

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

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은

안 제3조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내용을

안 제4조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위탁에 관한 내용을,

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전략산업 육성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,

평창군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

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,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.

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전략산업”이란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.

제3조(육성기본방향) ① 군수는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전략산업의 발굴·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금·기술개발·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전략산업 육성 지원) ① 군수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
2. 신사업 기획 및 연구
3. 창업 보육 및 인력양성
4. 산·학·연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

5. 해외교류, 해외시장 진출, 홍보·마케팅 활성화

6. 그 밖에 군수가 전략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사업 평가) ① 군수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도

· 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 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 설치) 군수는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

평창군 전략산업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.

1. 전략산업 육성 정책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

2. 전략산업 육성의 선택과 변경,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

3. 산업체와 기술협력,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

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

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1. 산업경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수 및 연구원, 유관기관 관계자이거나 과거 경력이 있는 사람

2.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

3. 그 밖에 군수가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회 개최) ① 위원회 회의는 군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이해관계 상충 등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만 구성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

제11조(수당 및 자문료 등)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전략산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비밀의 누설금지)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(준용) 사업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